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71회 임시회 (2024. 10. 11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정건설위원회

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행정건설위원회
전문위원 권 하 나

1. 제출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4-128
- 나. 제 출 자: 마포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4년 9월 27일(금)
- 라. 위원회 회부일자: 2024년 9월 30일(월)

2. 제출사유

반려견 놀이터 시설의 민간운영 위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민간운영 위탁 근거 규정 신설(안 제27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타사항
 - 1) 입법예고: 2024. 8. 29. ~ 9. 18. (제출된 의견 없음)
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- 5) 제1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: 원안의결(2024. 9. 24.)

5. 검토보고

- 동 조례 개정안은 2024년 9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- 개정안은 지난 9월 개정한 ‘마포 반려동물 캠핑장’의 운영을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.
- 조문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안 제27조(관리·운영의 위탁)은 구청장은 반려견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.
- 또한, 반려견 놀이터의 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고 명시함.
- 이와 같이 살펴본 바,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 반려동물 캠핑장의 운영을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,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음.

- 아울러, 반려동물 캠핑장을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인건비·운영비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, 캠핑장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운영 활성화 측면에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.